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3. 5.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4월 7일 조수진의원 등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4월 8일

다. 상 정 및 의 결 일 자 :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2. 9. 20)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2. 11. 17)

상정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정무위원회(2022. 12. 5)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조수진 의원)

최근 물품의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되어 사업자가 해당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부품을 교환하지 못하는 등 소비자의 수리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는 사업자가 물품별 부품보유기간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아니하여 소비자가 부품보유기간을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물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함에 있어 부품보유기간에 관한 표시기준도 정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해당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현준)

○ **현행법**은 국가에게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 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물품 등에 대하여 상품명, 제조연월일, 품질보증기간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물품 등에 대하여 국가가 정해야 하는 표시기준에 부품보유기간을 추가하려는 것임.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10조(표시의 기준) ①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물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표시의 기준) ①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조연월일, <u>품질보증기간</u>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 유효기간	4. ----- <u>품질보증기간</u> , <u>부품보유기간</u> ----- ----- -----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상 부품보유기간에 관한 표시기준이 규정되지 않은 관계로 사업자가 물품에 대한 부품보유기간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부품을 기간 내 교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가 부품보유기간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 받을 권리를 더욱 공고히 하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현행법 제10조제4호는 ‘품질보증기간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 유효기간’이라고 규정하여 품질보증기간과 유효기간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부품보유기간, 품질보증기간’으로 조문을 구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겠음.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4. 제조연월일, <u>품질보증기간</u>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	4. ----- <u>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u> ----- ----- -----	4. ----- <u>부품보유기간, 품질보증기간</u> ----- ----- -----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은 그 유효기간	-----	-----

-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7호)에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품목별 부품보유기간¹⁾을 제시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 및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의 부품보유기간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도록 한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한홍)

- “위원회 대안” 마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I, 별표 II, 별표 III, 별표 IV와 같다.

- 없음

7. 심사결과

- 대안반영 폐기